

4) 대지면적 : 691.00 m^2
5) 건축연면적 : 1,032.75 m^2
첨부 :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서 4부
제 2 안
수신 : 서대문구 연희동 172-1 (주)종근주대 대표 박종우
제목 :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1. 우티구 중동 47번지 지상에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부 통과 승인합니다.
2. 동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함을 하되, 인가, 허가 또는 신고의 감독을 받을 것이며, 착공, 중간진도 및 준공보고등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에 사용될 설계도서를 범침과 같이 송부 하였으니, 본 설계도서의 의한 계층명을 준수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 개요
1) 건설 규모 : 연립주택 3층 1동 18세대
2) 건축연면적 : 1,032.75 m^2
첨부 : 1) 민영주택 건설계획 승인서 4부

2011년 11월 11일

2) 사업승인 조건 4부

3) 설계도서 4부.

제3안

수신 : 서울특별시청

참조 : 주택기획과장

제목 :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고

마포구 중동 47번지 지상에 (주) 동건주택 개발(주)의 신청으로 부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과 같이 승인 하연기 보고합니다.

첨부 : 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2부
2) 사업계획승인 결과 보고서 2부.

제4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통보

1. 관내 중동 47번지 지상에 (주) 동건주택 개발(주)의 신청으로 부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 하연기 통보하니 업무 수행에 착오없이 기망.

2. 동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1. - 8항 규정

직
본
대
장
인
인

에 의거 인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밝힘하니 그 용수와 설계도서에

의한 [별첨 제보영역 및 구역]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이다.

3. 사업승인 내역 및 승인조건별 명세, [별첨 제보영역 및 구역]의

영역별 [별첨부서와 협의하여 지도, 감독 및 준공을 위한] 계획에 관한

첨부 : 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첨부 가

2) 사업승인 조건 가.

수신처 : 산업확장, 환경보장, 도시경관보장, 국토보장, 영토관리, 관광, 문화보장, 국토보장, 수도권식화장.

개도일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함 영보

1. 우석구 중동 47번지 지상에 (주)종건주택개발과 영보이로 부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주택건설진흥법 제33조 제1항에의거

사업승인 하얏기 통보하오니(하)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조)

가. 승인 내역

1) 사업주체 : 서대문구 연희동 72-4 호

(주)종건주택개발과 영보

2) 건설규모 : 연면적 1,300 평

4127

본
문
대
장
일

첨부 : 사업승인 사본 1부

수신처 : 서울 체신청, 산촌전화국장, 한국전력공사 서부기점장, 도시가스사업
소장, 서울 1,2과장, 영소과장, ~~영남동강~~ (성상동, 성기도서점부)

제 6 안

수신 : ~~서울특별시~~ ~~영남동강~~ 발신 : ~~서울특별시~~

참조 : ~~서울시~~ ~~영남동강~~

제목 : ~~서울~~ ~~서울~~ 게재 의뢰

1. 마포구 풍동에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서울~~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 게재 구분 : 도시

나. ~~서울~~ 게재 건명 : 민영주택(연립)건설사업 계획 승인

다. 법적 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및 동년

시행령 제 32조

첨부 : 도시문 사본 2부

제 7 안

수신 : 건설관리과장

제목 : 도로정용 허가 사항 통보

판내 중동 47번지 지상에 필립 내용과 같이 민영주택 건설사업

국문대장판

승인과 동시에 도로점용허가 처리하였거 동도하니 업무에 참고합시다.

첨부 : 도로점용허가 사항 통보서 및 도면 1부

제8안

수신 : 서울특별시

참조 : 시민과장

제목 : 관인 남인 의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년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민영

주택(연립)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기 승인서 고지 및 ~~관인 남인 의뢰~~자

관인 남인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1부

~~이 관보가장 의뢰 공문 1부~~ 끝.

관보가장 의뢰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서

승인
번호

14-222

사업구분	상호	(주) 동원주택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나종옥	사업소재지	대전광역시	
설계거처	상명	명흥순	소재지		
	주소	대전광역시	전화	222-2222	
공시 식별지	상명		소재지		
	주소				
사업 요건 내역	사업목적	대전광역시	공도	인원	
	사업내용	바리	건축	주택	
		상명	명흥순	소재지	대전광역시
	사업기간	취공	준공	승인	일
		198. 8. 26	198. 9. 26	198. 9. 16	
승인내역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촉진법 제 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함.

1988. 9. 16
대전광역시

최보래
대지조성

고 시 (인)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2조의 규정이 의거 마포구 마포동 연립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시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위원회
승인

- 1. 사업명 : 민영주택(연립) 건설사업
- 2. 사업주체 : 석대문구 연희동 172-1호 구양연주택 건설사업조합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 가. 위치 : 마포구 중동 47 번지
 - 나. 대지면적 : 697.00 m²
 - 다. 규모 : 연립주택 3층 1동 18세대
- 4. 사업시행기간 : 1988. 8. - 1988. 12.

도시
계획
위원회
대
장


사 업 승 인 조 건

1. 세대별 양수기 설치 가능토록 하고 K-S 규격의 양수기 보호등을 설치 함 것.
2. 급수 내부공사는 내식성 지직물 사용하여 상해수도 전등 시공업체모 하여금 시공하도록 함 것.
3. 식탁과 침야액 금속기동 장치가동 및 먼지날성으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고, 노사온난 처형의 비산분진 방지 조치 (덮개 및 격망 감수등)를 철저하게 함 것.
4. 우수가 인접대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 함 것이며, 본 공사 착공시에는 착공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것.
5. 과 건설공사는 (종류별) 면허증 소지자에 한하여 시공하도록 함 것.
6. 공사 시행전에 경계측량도 공사시행하도록 함 것.
7. 동 사업에 따른 제반 법규 준수 및 건축물 준공전에 각종 누수시설 관공을 선행 함 것.

9월 10일
대장 김

상 의 내 역

구 분	사업 목적	건설의의	주요의의	구분	주요의의		계	세대수	비고
					지용면적	건용면적			
건물 면적	(주)정주택 (주)정주택	마포.정주 47단지	연면적	부	(㎡)	(㎡)	(㎡)	3	
					39.37	16.57	55.94		
					42.60	19.08	61.68		
					34.55	16.56	51.11		
					39.14	20.33	59.47		
					39.85	18.75	58.60		
					39.55	17.86	57.41		
	계		18						

4133

정주택
주식회사